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질의

1 질의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토지보상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공익사업”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사업을 말하는 것 인지?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는 감정평가 기준 적용 등의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2 회신

가. 질의 “가” 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용지중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용지공급 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나. 질의 “나” 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공익사업”은 동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 (관계법령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한 경우 포함) 으로 봅니다.

다. 질의 “다” 항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7.15. 토지정책과-3443】